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기 관 명 (부 서 명)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치유관광사업 등록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식,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 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920호, 2025. 4. 8. 제정, 2026. 4. 9. 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치유관광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3호서식·4호서식)
- 나.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절차, 제출 서류 및 신고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별지 제5호서식)
- 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 제출 서류, 신청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
- 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 방법, 신청서식 및 인증 승계 신고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별지 제6호서식·제8호서식)
- 마.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시·도지사의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절차를 명시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사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요건을 모

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치유관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치유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사업 시설”이란 영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5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방법)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치유관광시설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위한 평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영 제7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제6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갱신신청)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갱신신청

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승계 신고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승계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말한다.

제8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
3.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현황
4. 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개시 연월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영 제6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0호 및 제0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제 호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업종

위의 업체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④ 상호 (명칭)					
⑤ 업종					
⑥ 영업소소재지		(전화:)			
⑦ 등록(허가)번호					
⑧ 등록(허가)연월일		. . .			
⑨ 재발급사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 변경 서류 2. 주소 및 소재지 변경 서류	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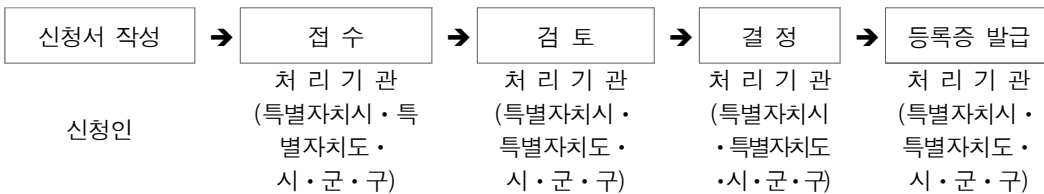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치유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	-----	------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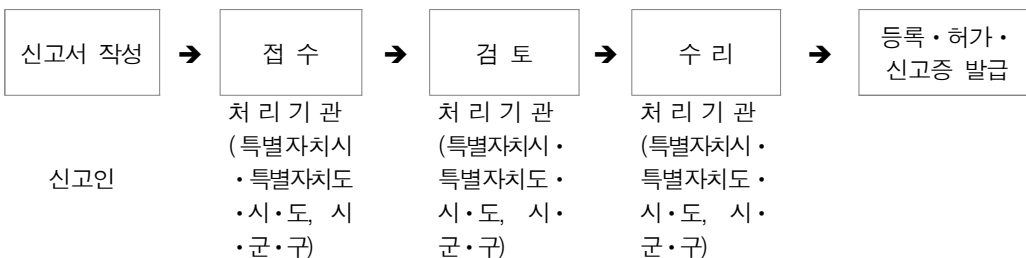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수수료
	2.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승계 사유가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인 경우로 한정한다)	0원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 포함한다)	

작성 방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우수치유관광시설 [] 인증 []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팩스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명 / 직위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인증신청 대상	시설·서비스명		최초등록일			
	소재지(또는 주소)					
	인증신청 업종		면적(㎡)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8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치유관광시설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위한 평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

처 리 질 차						
제출	⇒	접수	⇒	평가·심사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심의)	⇒	평가·심사 결과통보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

인증번호:

인증 사업자

1. 상호(법인명):
2. 대표자:
3. 주 소:

인증 대상

1. 시설·서비스명:
2. 소재지(또는 주소):
3. 면적:
4. 사업의 종류:
5. 유효기간:
6. 그 밖의 사항: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치유관광 시설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사업자 승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승계일	
	사업장 소재지		
	승계 사유 [] 상속 [] 양수 [] 합병 [] 그 밖의 사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관광산업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 1부 2.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0원
------	---	-----------

동 의 서

우수치유관광시설 사업자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승계인 정보와 승계 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치유관광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